

##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2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8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윤영일

유성엽 · 이춘석 · 최경환

김종회 · 김동철 · 김광수

백재현 · 김삼화 · 정인화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주요내용

「난민법」 제25조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, 제3자뇌물제공 등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(안 제48조 신설).

##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(별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제)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(분과 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48조(별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</u> <u>제)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의</u> <u>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</u> <u>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